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경감)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감경사항)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근거	처분 (변경)내역	처분일자
주식회사 셈즈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35, 3층 (가좌동)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서구 2021-11-0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기 존	2024. 06.20.
				영업정지 4개월 (2024.7.1. ~ 2024.10.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 * 수료증 접수 (2024.07.29.) 전건협 건설교육 제 1399호 8시간 (2024.7.20~2024.7. .26.)	변 경 (감 경)	2024. 08.27.
				영업정지 3개월16일 (2024.7.1. ~ 2024.10.16.)	

2. 기타사항

-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